



고용노동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수신 관내 건설현장 대표(현장소장) 귀하  
(경유)

제목 온열질환예방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안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온열질환예방 항목을 안내하오니, 귀 건설현장에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사용가능품목	비고
<b>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b>	<b>사용기간 :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b>	
가.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 형태의 이온음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적용
바. 온열·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비용 및 냉·난방기기의 임대비용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 시설(구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이 외의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 쿨토시, 간이휴게실에 비치하는 의자 등 품목은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현장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법 제64조)를 통하여 사용가능. 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근로감독관 서정환 과장 전결 2025. 6. 2. 김병수

협조자

시행 건설산재지도과-3343 접수

우 0454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동 1 장교빌딩) / moel.go.kr/seoul

전화번호 02-2250-5799 팩스번호 02-6915-4117 / ya11y8318@korea.kr / 대한민국 공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